

會計 監査人の 責任 範圍

李 正 浩
(서울대 大 經營大 教授)

I. 서 론

감사인의 의견이 첩부된 감사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최근 들어 회계감사인 의견이 첩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샀다가 그 기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심지어 형사고발하는 등 법정투쟁을 불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91년 12월 16일 (주)홍양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경원합동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988년 1월 20일에 상장된 (주)홍양의 주가는 1990년 한 때 3만 2천원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부도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1만 5천원선을 웃돌았다. 1991년 7월에 갑자기 부도를 내자 이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1992년 2월 19일 주가는 액면가인 5천원에도 못 미치는 2천 8백원으로 폭락하여 이 회사에 투자한 2천 8백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홍양이 3년동안 발표한회계자료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물론 공인회계사의 “적정” 의견이 그 회사에 투자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정의견은 적어도 그 회사가 공시한 회계자료가 유용한 투자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홍양의 재무제표에는 상장된 첫 해 당기순이익이 4억 2천만원 이었고, 1989년에는 4억 5천만원, 1990년에는 5억 4천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증권감독원의 감리결과에 의하면 (주)홍양의 재고자산은 1백 91억원 가량 높게 잡혀 있었으며, 1백 31억 정도의 부채가 회계자료에서 누락돼 있었다. (주)홍양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도를 내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손해를 입는 소액 투자자의 수도 비례하여 늘고 있다. 1991년 말까지 이들은 7만명 정도 였으나 1992년 이후에는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992년부터는 증권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단순한 감정보다 공표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투자하는 그들은 주저없이 회계감사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회계감사인의 사회적 책임 여부의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책임 범위를 논하기 위하여 먼저 감사인이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을 살펴보고, 감사인의 책임을 전문가적 책임과 법적책임으로 세분하여 본 다음, 현재 부실감사를 낳는 제도적 요인과 한국적 특성을 살펴보고, 갈등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계감사인의 사회적 역할

1. 투자자의 입장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된다. 그들이 감사 받은 회계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 이 글은 회계학세미나 강좌에서 발표한 사례로서 대학원 朴慶林군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임.

첫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투자자들은 투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감사인을 고용하게 되며 감사 보수는 감사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감사받은 회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를 직접 적발하거나 혹은 회계담당자들에게 부정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더욱 정확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며,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질은 개선되게 된다.

셋째, 신속한 정보입수를 통한 市場利益의 증대효과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efficient capital market)에서 모든 새로운 정보는 주가가격에 변동을 가져오며 정보가 공개되고나면 신속하게 균형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감사정보를 입수하는 투자자들은 더욱 많은 거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 경영자의 입장

경영자에 의한 감사요구는 그가 소유주의 代理人 혹은 受託者라는 사실과 함께, 소유주와 경영자 사이에는 기업의 목적이나 경영목표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경영자는 재무제표 상에 표시되는 자신의 경영업적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평가 받음으로써 경영자의 기업내에서의 지위는 강화되고 수탁책임의 성실한 수행을 확인받게 되므로 감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 代理理論(Agency Theory)에 의한 주장이다.

3. 국민 경제적 입장

감사에 의하여 公信力(credibility)이 부여된 재무정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제한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소득증대와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Ⅲ. 감사인의 업무상 책임과 한계

1. 감사인의 전문가적 책임

감사인의 전문가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을 따라야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부정, 오류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종업원이나 경영자의 부정을 적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초기의 감사가 경영자의 정직성이나 부정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서 출발 하였으나, 현대의 감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 감사준칙 332에서는 부정, 오류의 발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332 부정과 오류의 발견에 대한 책임

- (1)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 구조를 갖추고 이를 운용하여야 하는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 (2)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합리적으로 발견 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감사 대상기간에 존재한 부정이나 오류가 감사종료 후 발견된 경우에도 그 발견된 사실만으로 감사인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감사인이 기준에 준거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 실시 당시의 상황에서 수행된 감사절차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근본적으로 부정, 오류의 방지, 발견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다. 감사인의 책임은 부정,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초래되느냐 여부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의 수행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경당한 주의를 다하여 검토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제3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 감사인의 법적 책임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못한 행위, 즉 부실감사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적인 제재에는 손해 배상, 형사처벌, 징계 등이 있으며 이를 감사인의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제도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도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외감법에 위임하고 있다. 외부감사와 관련된 현행법은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② 공인회계사법, ③ 증권거래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들이 민법과 상법의 관련 조항들과 함께 우리나라 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외감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법적책임의 대상을 “임무를 해태”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회계감사기준상의 신의 성실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신의성실 규정을 벗어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감사가 그 처벌 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크게 계약당사자인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제3자인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감사인의 법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외감법, 증권거래법, 민법 등의 해당조문을 감사대상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監査對象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의 계약의무위반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인과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요청한 감사대상회사 사이에는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은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와 숙련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여 감사대상회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감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또 정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 등의 부정이나 허위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감사대상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감사대상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채무의 내

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고의나 과실이란 용어는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적용하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 회계감사기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핵심개념은 신의성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감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에서도 감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감사 대상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바, “임무해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의성실을 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실이나 임무해태의 경우는 감사인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된다. “중과실”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기울이지 않은 경우이고, “경과실”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조금이라도 결여된 경우이다. 감사인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니므로 고의, 중과실은 물론이고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감사인은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주의와 숙련을 다하여 행동하여야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나 부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한편,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이 합동회계사무소나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합동회계사무소나 감사반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외감법 제17조 제6항을 준용하고, 감사대상회사는 상인인 회사이므로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또한 이러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민법상의 계약의무위반이나 외감법상의 임무해태를 행하였고, 감사대상회사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감사대상회사측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외감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4항에 의하여 합동회계사무소나 감사반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감사인과 연대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증거책임이 부과된다.

(2)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 責任

감사인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근거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민법에 의하면 제 3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하여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때에는 소멸시효도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이러한 민법에 따른 감사인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제 3자는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 3자인 본인이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①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③ 본인의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책임

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게 된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법으로서, 제 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감사인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 내용은 의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의감법 제 17조(손해배상책임) 제 2항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 3자는 ① 중요한 사항의 감사보고서상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사실 ②이로 인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증거책임이 있으며,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

근거법	손해배상대상	감사대상회사	선의의 제 3자
민 법	근거법조문	민법 제 390조	민법 제 750조
	원 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발생
	거증책임	-감사대상회사	-제 3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한 단기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엔 이를 적용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중 빠른 시기
주식 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원 인	-감사인의 임무해태 -감사대상회사의 손해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 -이로 인한 제 3자의 손해
	거증책임	-감사대상회사	-선의의 제 3자 : ① 감사보고서상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 ② 이로 인한 본인의 손해 -감사인 : 임무를 해태하지 않은 사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청구권자가 자신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빠른 시기	과 동
증권 거래법	원인, 거증책임, 소멸시효	해당사항 없음	-의감법 준용
	손해배상액	해당사항 없음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가가격(변론종결전에 처분했을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금액

하기 위해서는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이 합동회계사무소나 감사법인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외감법 제 17조(손해배상책임) 제 4항에 의하여 합동회계사무소나 감사법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감사인과의 연대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가 그 책임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증거책임을 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 페이지의 표와 같다.

(3) 刑事責任 및 懲戒責任

원칙적으로 감사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감사인에게 부과된 제도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다만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인 정보이용자로서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원인이 임무의 해태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곧 감사인의 전문가적 기준인 회계감사기준상의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인의 제도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을 동시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범으로는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이 있다. 관련 조문만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처벌을 정한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할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 1항과 같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조 [벌칙]

①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

3. 제 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때

4.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때

②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제 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와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감법시행령 제 7조 ①참조).

제 9조 [비밀엄수] 감사인,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조 [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0조 [벌칙]

제12조 제2항(회계법인과 합동회계사무소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조 [책임 및 보수]

②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징계처벌을 정한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무부 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5조 [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기준은 증권관리 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8조 ①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형사처벌을 정한 법령을 참조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징계]

①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견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자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한 자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3. 감사인의 책임 한계

앞절에서는 감사인의 직업적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이에 따른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성격상 감사인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감사인의 업무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1) 감사의견에 따른 책임범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란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것으로서 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감사인의 합리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사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며,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어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하고 경영성고가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 오류에 대한 책임범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회사의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인에게 모든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목적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표명에 있으므로 감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이지 부정적발을 위한 감사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감사인의 책임은 법률적 책임을 수반하는 변호사나 감정인의 책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오류는 부정이 없다는 의미로

서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규정되므로 감사계약서상에 부정 및 오류의 적발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감사인의 부정적발책임을 없다.

넷째, 시사(sample test)로 특정지워지는 현대의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모든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인의 업무상 책임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회계감사수행시 준거해야 할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는가의 여부이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경영성과의 수준, 부정·오류·불법행위 등의 발생사실 여부가 아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준수의 충실성 정도는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경과실, 중과실, 사기 등의 형태로 구분되어 이러한 정도와 감사인이 책임을 지는 대상(당사자능력의 보유여부)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상 책임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Ⅳ. 감사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구조적 고찰

앞에서 감사인의 책임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나, 부실감사의 문제점이 표출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논란과 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부실감사의 환경적 토대가 되는 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감사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구조적 고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은 총 자산이 40억원을 넘는 기업에 한하며 업체수로는 6천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회계감사가 올바르게 됐는가를 판별하는 증권감독원의 감리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1991년 국정감사시 모 의원이 의뢰한 감리결과에 따르면 1991년 8월까지 총 감리실적은 118社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감사에 결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전체 감리대상의 30.5%에 달하는 36社 42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회계감사가 심각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그렇다면 이처럼 회계감사 내용이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식결산 사례가 늘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 자유수임제에 있다고 본다. 자유수임제는 1982년부터 시행된 외감법에 따른 것이다. 그 전에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을 매정해 주었다. 회계사 업계에 경쟁을 유발하고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고자 자유수임제를 도입한 것이다. 자유수임제 아래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주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의 대가로 용역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고객의 잘못을 가려야 하는 모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감사업무를 계속 맡기 위해서 고객의 부당한 요구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우리현실에서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보장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사인의 자격으로 적격성, 독립성과 신의성실성을 들고 있다. 아무리 자질면에서 적격하고, 정당한 주의의 기울여 신의성실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자유수임제 아래에서 공정한 회계감사가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자유수임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선진국의 수임제는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의 선임을 주주총회(종전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풍토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회계감사인을 선택하는 셈이다. 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감사인 선임을 의결한다. 또한 공인회계사들이 소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 감사인을 바꿀 때에는 그 다음달까지 기업은 사유를 공시하고 증권관리위원회는

정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감사인을 변경하는 일은 드물다.

본인의 견해로는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배정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매년 감사인의 교체에 따른 감사비용의 증가와 정보위험의 감소에 따른 효익의 증가를 고려하여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감사비용의 증가가 더 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자유수임제를 유지하되,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경영체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액주주와 채권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실감사에 대하여 증권감독원도 책임이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증권감독원의 감리는 전체 감사건수의 5%에 불과하며, 감리과정에서 부실감사로 밝혀졌을 경우 기업에 대한 징계조치가 미약한 것도 분석결산이 시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법률”에는 분석결산을 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거나 감사인지정 또는 변경요구가 고작이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삼해공업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받은 조치 중 가장 엄한 벌이었다.

증권감독원의 철저한 감리활동과 재무제표 조작기업에 대한 처벌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V. 결 론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지위는 “公信力”에서 나온다. 투자자들이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오히려 공인회계사의 자질과 독립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공인회계사들은 개인적 안위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자기 주장을 가차 없이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기대수준과 회계감사인의 기대차이의 증폭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일련의 부실감사건들에 대하여, 일반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부실감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기업과 그것을 알면서 부정에 공모한 감사인에게 있음은 두 말 할 나위없는 사실이나, 현재의 감사제도 하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도덕적 기대만으로 현 체제를 끌고 간다는 것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건 도박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주식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은 주식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불신을 낳고,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부실감사의 책임은 해당기업, 감사인과 증권감독원이 나누어지고 있는 바 감사인의 책임범위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감사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엄밀한 비용—효익 분석이 행해져서 현 감사제도는 회계정보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 해 주는 제도로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본 연구를 맺을 까 한다.

〈참고 자료〉

· 외감법 17조

第17條(損害賠償責任)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 또는 감사만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 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 1항 후단 또는 제 2항 후단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감사인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실감사 사례 표

회 사 명	감 사 인	부 실 감 사 내 용	감 독 원 조 치 내 용
삼환기업	청운회계법인	투자자산 과대계상, 분양수입 및 분양원가 과대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삼환기업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금강피혁	동림회계법인	재고자산 과대계상, 간가상각비 과소 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금강피혁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대 준	청운회계법인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대준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동 양 보 일 터	안건회계법인	매출수익 인식방법의 부적정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동양보일터 92회계연도 감사업무 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홍 양	경원합동회계사무소	재고자산 과대계상, 부채 과소계상	회 사 : 대표이사, 경리담당이사 해임권고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인경고, 증관위 감사인지정대상제외(3년), 홍양 92회계연도 감사업무 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기온물산	한림합동회계사무소	재고자산과대계상, 환급관세 과대계상, 외환외상매출급 과대계상, 신금융 과대계상	회 사 : 대표 이사 및 경리담당이사 해임권고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인경고, 증관위 감사인지정대상제외(2년), 기온물산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케니상사	청운회계법인	채무면제이익 과대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인주의, 증관위 감사인지정대상제외(1년), 케니상사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금라방직	신한회계법인	매입채무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 사 : 대표이사, 경리담당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공인회계사 : 경고

공성 통신전자	삼원합동	채고자산에 대한 기록 및 통제부 실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공성통신전자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아남정밀	세 동 회 계 법 인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아남정밀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백산전자	신 한 회 계 법 인	제조원가 과소계상, 증대한 불확 실성에 대한 재무제표 미반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백산전자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미 우	삼 덕 회 계 법 인	채고자산 과대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미우 92회계연도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인성기연	새 화 회 계 법 인	채고자산 과대계상	회 사 : 92회계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인성기연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 : 경고 및 주의
서전식품	안 건 회 계 법 인	채고자산 과대계상, 선급금 과대 계상	회 사 : 대표이사, 경리이사 해임권고, 92회계 연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공인회계사 : 경고
장영해운	성 진 합 동 회 계 사무소	부채 과소계상	회 사 : 감사인지정, 각서징구 감사인 : 감사업무제한, 각서징구 공인회계사 : 경고, 주의
한일방직	삼 덕 회 계 법 인	영업권 미상각	회 사 :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업무제한, 각서징구 공인회계사 : 주의
상해공업	인 성 합 동 회 계 사무소	채고자산 과대계상, 선급비용 과 대계상, 부채 과소계상	회 사 : 유가증권발행제한(3개월) 감사인지정 공인회계사 : 감사업무제한, 주의
신광기업	세 동 회 계 법 인	매출원가 과소계상	회 사 :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업무제한, 각서 징구 공인회계사 : 경고, 주의
서 울 식품공업	산 동 회 계 법 인	관계회사 주식평가손 미계상	회 사 :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업무제한, 각서징구 공인회계사 : 경고, 주의
고려합성	청 운 회 계 법 인	자산, 부채 과소계상	회 사 :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감사인 : 감사업무제한, 각서징구 공인회계사 : 경고, 주의
경일공업	세 동 회 계 법 인	주주와의 거래, 우발채 무사항에 대한 주석 미 기재	회 사 : 감사인지정, 각서징구 감사인 : 감사업무제한, 각서징구 공인회계사 : 경고

참 고 자 료

1. 시사저널, 1992. 3. 5

2. 주간매경, 1992. 3. 18

3. 이근수,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1991

4.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무역경영사, 1992

5. 삼일회계법인, 삼일감사론, 1992
6. 이진택,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연구(미국의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7. 김천수, 우리나라기업의 부의부채감사와 공인회계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4
8. 小法典, 현암사, 1992
9.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 1991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89
11.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 1990